AI 피해자 성주군세 감면동의안

의 안 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11년 5월 일
제 출 자 : 성주군수

1. 제안이유

2011년 1월 성주군에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(AI)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군세를 감면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제39조 및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제4조 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AI 피해를 입은 가축시설과 당해 부속토지에 대한 2011년분 재산세 면제

3. 참고사항

가. AI 피해자 감면예상액 : 붙임

나. 관계법령 : 붙임

지방세 감면처리요령〔경상북도 세정과-5003(2011.03.31)〕

AI피해자 성주군세 감면 동의안

성주군수가 제출한 AI 피해자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 및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4항에 따라 성주군세를 감면하도록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.

1. **감면대상** : 2011년 1월 성주군 관내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(AI)로 피해(AI로 인한 살처분 등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피해를 말한다)를 입은 가축시설과 당해 부속토지

2. **감면내역**

가축시설 및 부속토지분 재산세 : 가축 살처분 피해를 입은 축사 등 가축시설 및 당해 부속토지에 대한 2011년분 재산세를 면제한다.

3. **감면 예상액**

※ 2010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내역서 기준 (단위:천원)

세목	예상세액	산출근거	비 고
재 산 세	1,636		3농가
건축물	982	축사 1㎡당 × 80원	피해면적(12,269㎡)
토 지	654	토지 1㎡당 × 36.6원	피해면적(17,865㎡)